

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(제12조 관련)

1.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

공사비	수수료의 요율 기준(공사비에 대한 비율)	참 고
100억원 이하	9.0% 이내	가. "공사비"란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·이윤·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나.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설계·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.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. 라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. 마.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. 바.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.
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8.0% 이내	
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7.5% 이내	
500억원 초과	7.0% 이내	

2. 토지 매매·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

가. 토지매매 수탁

토지매매금액	수수료 요율의 기준 (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)	참 고
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	1.7% 이내 1.6% 이내	감정수수료, 신문 광고료, 등기수수료,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.
1억원 이하 1억원 초과	1.5% 이내	
2억원 이하 2억원 초과	1.4% 이내	

5억원 이하	1.3% 이내	
5억원 초과		
10억원 이하		
10억원 초과	1.2% 이내	
30억원 이하		
30억원 초과	1.1% 이내	
50억원 이하		
50억원 초과	1.0% 이내	

나. 토지관리 수탁

구분	수수료의 요율 기준	참고
사용·임대관리	사용·임대료(지연손해 금을 포함한다)의 10% 이내	1)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, 감정수수료, 신문 공고료, 등기수수료,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. 2)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수 있다.
유지관리	유지관리 비용의 10% 이내	
가치증대관리	가목의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 적용	